#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61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박희승·서영교·윤준병

강훈식 · 홍기원 · 김준혁

위성곤 · 강유정 · 박홍배

소병훈 • 이성윤 • 박지원

박상혁 • 추미애 • 조계원

정준호 · 임광현 · 이훈기

민병덕 • 이광희 • 김한규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1990년 66 6만 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 208만 9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음.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업·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자경을 한 농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농지를 경영하 거나 경영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자경농 민의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를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 다수가 도시에 거주해 자경을 기대하기 어렵고, 매년 발생하는 상속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 되거나 매도되는 상속농지의 비율도 매년 10% 내외로 낮음.

또한 정부의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전체 경영주 대비 40세 미만 경영주의 비율은 되레 낮아지는 추세이며, 청년농의 경우 농지 마련을 위한 자금 부족, 농지 거래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농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매입한 농지를 실수요자인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육성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5신설).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5(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기간	감면 세액
8년 이상 9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9년 이상 1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세액
10년 이상 11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
11년 이상 12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세액
12년 이상 13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
13년 이상 14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14년 이상 15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
15년 이상 16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세액
16년 이상 17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17년 이상 18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세액
18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제69조의5(한국농어촌공사에 위 탁 임대한 농지 등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감면)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 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
	다)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 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 대(使用貸)한 후 그 농지를 한 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 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기간감면 세액8년 이상양도소득세의 100분의9년 미만50에 상당하는 세액9년 이상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년 미만55에 상당하는 세액10년 이상양도소득세의 100분의11년 미만60에 상당하는 세액11년 이상양도소득세의 100분의12년 미만65에 상당하는 세액12년 이상양도소득세의 100분의13년 미만70에 상당하는 세액

13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u>14년 미만</u>	75에 상당하는 세액
14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u>15년 미만</u>	80에 상당하는 세액
<u>15년 이상</u>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u>16년 미만</u>	85에 상당하는 세액
16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u>17년 미만</u>	90에 상당하는 세액
17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u>18년 미만</u>	95에 상당하는 세액
18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번 의경	<u>100에 상당하는 세액</u>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농지를 청년농 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